

해 양 수 산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양구군

내 용

강원도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해양수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¹⁹⁸⁾는 [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로부터 총 8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38,900백만원(연 평균 12,970백만원)을 교부받아 본청(○○○본부) 및 해당 구·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해양수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1] 최근 3년간 강원도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주요사업내용	국고보조금액
합계	83건		38,900
2013년	24건	수산물 위생관리 등	9,953
2014년	28건	수산물 위생관리 등	14,280
2015년	31건	수산물 위생관리 등	14,66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 감사원 수감 지자체는 중북감사 방지 차원에서 제외(강릉시, 동해시, 춘천시, 속초시, 태백시, 홍천군)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대통령령¹⁹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2. 자치단체 보조사업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등의 경우²⁰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에 따라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사업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정하여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본부, 삼척시 등 4개 시·군은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사업 시행완료 후 35건에 대한 집행잔액 555,100천원과 보조금 발생 이자 12,746천원을 합하여 총 567,846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19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200)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표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 반납 현황

년도	시군명	사업명	예산현황(천원)		국고보조금 미 반납액(천원)		
			예산액	집행액	계	집행잔액	이자
합 계		35건	4,451,174	3,492,410	567,846	555,100	12,746
2013	본청 (○○○ 본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51,920	50,785	1,135	1,135	
		수산자원회복사업	19,000	18,945	55	55	
		수산행정지원	24,570	5,569	19,001	19,001	
		연안정비사업	193,704	193,690	14	14	
	고성군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719,580	488,835	243,247	230,745	12,502
	양양군	수출양식단지(양식섬)육성사업	450,000	44,663	1,672	1,672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53,000	152,835	165	165	
2014	본청 (○○○ 본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63,000	55,566	7,434	7,434	
		수산행정지원	24,690	3,705	20,985	20,985	
		연안정비사업	288,239	241,611	46,628	46,628	
	삼척시	내수면개발사업소운영	169,000	168,969	31	31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35,100	34,388	712	712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3,900	3,600	300	300	
	고성군	연근해어업구조 조정	196,800	102,071	94,729	94,729	
	양양군	수출양식단지(양식섬)육성사업	1,050,000	1,033,820	16,180	16,180	
		낙시터환경개선	20,000	19,998	2	2	

2015	본청 (○○○ 본부)	수산물 위생관리	30,000	27,854	2,147	2,147	
		수산물 위생관리	35,000	31,500	3,500	3,500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4,200	3,780	420	420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45,000	44,535	465	465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36,000	26,597	9,403	9,403	
		수산자원회복사업	19,000	16,985	2,015	2,015	
		연구교습어장운영	21,000	17,807	3,193	3,193	
		수산행정지원	24,700	20,075	4,625	4,625	
		수산업경영인육성	19,200	18,900	300	300	
		연안정비사업	233,800	180,997	52,803	52,803	
	삼척시	어선인양기설치	40,000	37,200	2,800	2,800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58,750	52,761	5,994	5,989	5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0,950	10,765	187	185	2
		해수욕장 수질조사 지원	7,000	6,750	250	250	
	고성군	친환경 · 고밀도부표보급지원	5,000	4,820	180	18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22,740	22,374	525	366	159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145,000	122,254	22,746	22,746	
		친환경어업(친환경어구보급)	223,331	220,926	2,483	2,405	78
	양구군	15년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	8,000	6,480	1,520	1,520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완료한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반납조치 하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에서 제외된 관할 시·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장, 고성군수, 양양군수, 인제군수는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완료한 사업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보조금관리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